

2013년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공고

부동산 등 유형자산이 아닌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한 담보로 인정되어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“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”의 세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. 5. 1.

특허청장

I. 사업목적

- ☐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, 지식재산권의 가치 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*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

*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(IP)을 부동산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결과 금액을 담보물의 가치로 인정

- ☐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용 특허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협약은행*은 기업추천 및 평가된 금액 내에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실시

* 2013년 5월 1일 현재 협약은행 - 한국산업은행

II. 지원대상

- ☐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제품 또는 서비스에 실제 적용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·중견기업

Ⅲ. 지원내용

□ 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에서의 특허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

* 국고지원금은 건당 최대 15백만원 한도('13년 시범사업에서는 본인부담금 없음)

□ 평가기관의 특허기술평가

○ 지식재산권(특허권)의 담보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가치 평가를 수행하여 그 평가결과를 은행 및 기업에게 제공

○ 특허기술평가는 발명의 평가기관 중 협약은행이 지정한 평가기관*에서 수행

* 한국산업은행(협약은행)은 한국발명진흥회를 '13년 평가기관으로 지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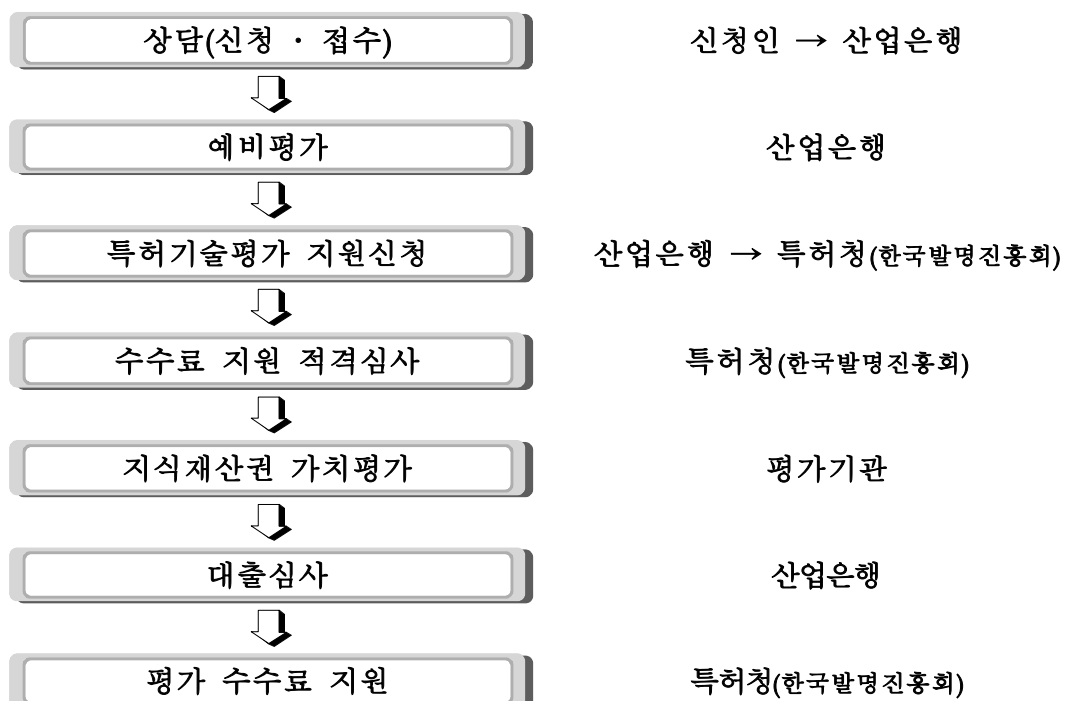
□ 협약은행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

○ 평가기관의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금액을 담보로 인정하여 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을 시행

* 한국산업은행(협약은행)은 기업 당 최대 20억원을 한도로 대출

* 대출의 시행 여부는 특허기술평가 이후 협약은행의 별도 대출심사 결과에 의함

Ⅳ. 사업 진행절차



V. 신청접수

☐ 신청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(예산 소진시 까지)

☐ 신청방법

○ 협약은행에서의 상담 및 예비평가 완료 후, 협약은행의 의뢰서를 첨부하고, 별첨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온·오프라인으로 제출

* 온라인 제출 : 신청서류 원본을 스캔(PDF 또는 JPG 파일)하여 다음 이메일로 제출
pid@kipa.org (제출 후 수신확인 전화 요망)

* 오프라인 제출 : 아래 주소로 신청서류 원본을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

* 제출주소 : (135-980)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-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
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

○ 별첨 신청서식 작성전 평가기관의 사전상담 필요

VI. 문의처

☐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(사업관리)

○ 정정숙 과장(02-3459-2943), 주한중 전문위원(02-3459-2945)

☐ 한국산업은행 기술금융부(협약 금융기관)

○ 문의전화 : 02-787-4077, 02-787-4075

☐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거래팀(지정 평가기관)

○ 문의전화 : 02-3459-2854

- [별첨] 1. (협약은행용)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 의뢰서 1부
2. (신청인용) 특허기술평가지원 신청서식 1부
3. 평가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식 1부. 끝.